

1. 개정이유

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“수련전문과목”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수련치과병원 등의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수련치과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 지정(안 제6조)

1)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“수련전문과목”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

나. 시정명령 기준 등의 명확화 (안 제16조)

1) 타 직역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치과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축소될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기준 보완 필요성이 제기

2)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에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”을 “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: 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
2.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: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회의 정원 조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의 지정) ① (생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 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 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 정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6조(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 관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수련치 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.
제16조(지정의 취소 등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 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 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 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.	제16조(지정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그 위반 사항 을 시정하도록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 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
하는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
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
수 있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: 수련치과
병원,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
과목의 지정 취소

2.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
경우: 제8조에 따른 치과 의사
전공의의 정원 조정